

# 자랑스러운 한국체대인 상 수여에 관한 규정

제정 2018. 2. 7. 규정 제750호  
개정 2020.11.23. 규정 제828호  
개정 2022. 3.23. 규정 제871호  
개정 2023.10.20. 규정 제894호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한국체육대학교(이하 “본교” 라 한다)의 발전과 명예를 높이는 데 공이 큰 사람에게 시상하는 자랑스러운 한국체대인 상(이하 “한국체대인 상” 이라 한다)의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후보대상)** 한국체대인 상 후보자는 본교 동문, 재학생 또는 본교에서 재직하였거나 재직 중인 사람으로서 인격과 덕망을 두루 갖추고 국가와 사회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여 본교를 빛낸 사람으로 한다.

**제3조(수상인원)** 수상자는 매년 2명 이내로 한다. <개정 2022.3.23>

**제4조(후보추천위원회)** ① 한국체대인 상 후보를 선정하기 위하여 후보추천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 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.

1. 당연직 위원 : 교무처장, 기획처장, 훈련학생처장, 사무국장, 산학협력본부장, 학보사 주간, 각 학과장 <개정 2023.10.20.>
2. 임명직 위원 : 총장이 임명하는 교양, 전공이론, 전공실기, 전문실기 교수 각 1명
3. 외부 위원 : 총동문회에서 추천하는 동문 2명

③ 위원장은 기획처장이 되며,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④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,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**제4조의2(위원의 임기)** ① 임명직 위원 및 외부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
② 결원이 생기거나 그 밖의 이유로 새로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[본조신설 2023.10.20.]

**제5조(위원회의 임무)**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.

1. 추천후보 심사
2. 최종 후보자를 총장에게 복수 추천
3. 이 규정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필요한 사항

**제6조(수당)** 총동문회에서 추천하는 외부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**제7조(후보자 추천)** ① 한국체대인 상 후보자는 개인이나 단체 등이 추천한다.

② 추천자는 별지 서식의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**제8조(수상자 선정)** 총장은 위원회가 추천한 후보 중에서 한국체대인 상 수상자를 선정한다. <개정 2022.3.23.>

**제9조(예우)** ① 한국체대인 상 수상자에게는 본교에서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책자 및 자료 등을 보내고, 본교의 각종 행사에 초청하여 예우한다.

② 한국체대인 상 수상자는 개교기념 행사 시 시상하며 기념패와 부상을 준다.

### **부 칙 (제750호, 2018. 2. 7.)**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# **부 칙(제828호, 2020. 11. 23.) (한국체육대학교 사무분장규정)**

**제1조(시행일)**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(다른 규정의 개정)** 자랑스러운 한국체대인 상 수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 
제4조제2항제1호 중 “교학처장” 을 “교무처장” 으로, “훈련처장” 을 “훈련학생처장” 으로, “대외협력단장” 을 “산학협력본부장” 으로 한다.

### **부 칙(제871호, 2022. 3 23.)**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# **부 칙(제894호, 2023. 10. 20.)**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